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근로감독관의 수사 완결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고,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내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봄(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

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4급부터 7급까지의”를 “장과 그에 소속된 7급 이상”
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4급부터 7급까지의”를 “7급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당연직 근로감독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.	제2조(당연직 근로감독관) ① 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	2. ----- <u>장과 그에</u> <u>소속된 7급 이상</u> ----- ----- -----
3.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	3. ----- ----- <u>7급</u> <u>이상</u> ----- ----- -----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	
연락처	(044) 202 - 7552